

# 2020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매뉴얼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---

# Ⅱ .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

---

# 1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요약

#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(舊.패밀리기업지원사업)이란,

경기도 27개 시군에 위치한 **연매출 120억 이내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** 영위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출원, 시제품, 시험분석, 전시회, 카탈로그, 홈페이지 등 **창안개발에서부터 판로개척까지** 여러 세부과제를 **각 한도 내에서 연간 2,000만원(단, 시흥시 1,000만원 한도)까지** 복수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

2020년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		
모집일	2차 모집기간 : 2020. 04. 29(수) ~ 2020. 05. 20(수), 3주간	
신청방법	이지비즈 사이트를 통한 <b>온라인 신청 및 온라인 완료보고서 제출</b> (통합공고에서 각 세부공고 페이지로 이동 후 하단의 [지원사업 신청하기] 클릭)	
구분	<b>사전 신청사업</b>	<b>사후 신청사업</b>
	선정발표일 이후 진행하여 <b>10월 31일까지 완료할</b> 과제신청	<b>2020년 1월부터 공고시점까지 완료한</b> 과제신청
지원과제	산업재산권출원 (국내특허, 국내실용신안), 시제품제작(금형,목업), 홈페이지, 국내전시박람회, 모바일앱, 제품패키지개선, 국내홍보판로(전문잡지, 홍보동영상, 카탈로그)	산업재산권출원 (국내외상표, 국내디자인) 국내외규격인증 시험분석  <b>※ 2020년 발행 인증서, 출원서, 심적서 기준</b>
추진절차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제작계획, 제작업체,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심사 후 선정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진행 및 비용지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서류검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2020년 1월부터 공고시점까지 진행완료 및 비용지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온라인신청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서류검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심사 후 지원결정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▼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div>

### 가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·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**나. 지원규모 :**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(단, 시흥시 10백만원) 한도 내 매칭 지원

**다. 지원기간 :** 2020. 3월 ~ 예산소진 시 까지

**라. 지원내용 :** 단계별 창안개발, 생산,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지원

분 야	단위사업별 지원
창안개발	· 국내산업재산권출원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 제공 지원
제품생산	· 시제품 개발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 지원
판로개척	· 홈페이지 제작, 국내 전시회, 모바일 앱 제작, 제품패키지 개선, · 국내 홍보판로 지원(전문잡지, 홍보동영상, 카탈로그)

### 마. 지원대상

-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연매출 120억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  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
#### <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(27개 시군) >

- 본 사(9) : 수원, 화성, 군포, 광주, 오산, 하남, 의왕, 여주, 양평
- 남부권(4) : 용인, 평택, 이천, 안성
- 서부권(4) : 부천, 시흥, 광명, 김포
- 북부권(10)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

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/군 지정)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내 입주기업 우대

#### <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(17개소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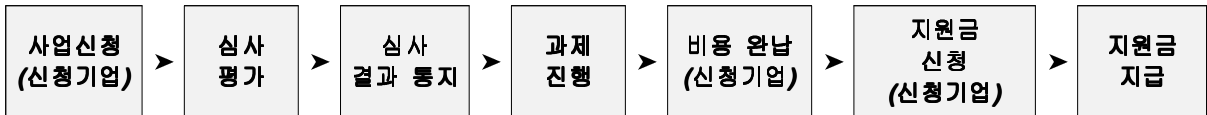
- 수원, 성남, 안양, 평택, 안성, 부천, 김포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(1)(2)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의왕, 판교

-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  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  -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2)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  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  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○ 유의사항

-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(단,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),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
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**바. 지원절차**



**사. 신청방법**

- 신청기간 : 2020. 3월 ~ 자금 소진 시까지(센터별 상이)
-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  - 홈페이지(온라인) 접속 >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> 단위지원사업 클릭 > 신청하기 버튼 클릭 >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> 온라인 신청하기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<b>필수</b>	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④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해당사업 견적서 ⑥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
<b>가점 항목</b>	·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,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·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**아. 문의 및 접수처**

권역(부서)	지역	담당자	전화번호
<b>본사 (SOS지원팀)</b>	광주, 군포, 의왕, 여주, 하남, 양평, 오산	정기호	031-259-6059
	수원	박준식	031-259-6276
	화성	홍선아	031-259-6277
<b>북부권역 (북부권역센터)</b>	양주, 남양주	조용택	031-850-7123
	고양, 동두천, 연천, 포천	양이나	031-850-7124
	가평, 구리, 의정부, 파주	임선빈	031-850-7128
<b>서부권역 (서부권역센터)</b>	<b>시흥</b>	<b>김장식</b>	<b>070-7116-4811</b>
	<b>광명</b>	<b>김학용</b>	<b>070-7116-4815</b>
	<b>부천</b>	<b>구현애</b>	<b>070-7116-4814</b>
	<b>김포</b>	<b>김남수</b>	<b>070-7116-4816</b>
<b>남부권역 (남부권역센터)</b>	안성	박진수	070-7726-9325
	평택	이연희	070-7726-8642
	용인	한미연	070-7726-9322
	이천	양미소	070-7726-9323

**자. 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**

- 건당 지원한도, 지원요건 등 상세내용은 **공통 운영기준** 및 **단위사업별 운영기준** 참조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
구분	단위 지원사업	세부내용	최대 지원한도 (지원비율)	시흥	광명	부천	김포
창안개발	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후)상표,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</li> <li>※상표출원 : 국내·외 / 디자인출원 : 국내</li> </ul>	국내상표 200 국외상표 500 디자인 280	○	○	○	○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특허,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대행기관 수수료 등</li> </ul>	국내특허 520 실용신안 360 (50%)	○	○	X	X
	(사후)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국내)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</li> <li>• (해외)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일부</li> </ul>	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(50%)	○	○	○	X
	산업기술 정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, 기업체에 제공</li> </ul>	200만원 (100%)	KSTI(한국과학기술정보원) 접수 연락처 : 구영덕 연구원 02-3299-6035			
제품생산	시제품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</li> <li>* 연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/ 금형, 목업 중 택1</li> </ul>	금형 1,400만원 목업 500만원 (50%)	금형 ○ 목업 ○	금형 ○ 목업 X	금형 ○ 목업 X	금형 ○ 목업 X
	(사후) 시험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150만원 (50%)	○	○	○	○
판로개척	홈페이지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글/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150만원 (50%)	○	○	○	○
	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 참가시 소요비용 지원(부스비, 기본장치비 등)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국내 300만원 (50%)	○	○	X	X
	모바일 앱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150만원 (50%)	○	X	X	X
	제품패키지 개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비용 지원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300만원 (50%)	○	○	X	X
	국내 홍보판로 지원	전문잡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</li> <li>*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(택1)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300만원 (50%)	○	X	X
홍보 동영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</li> <li>*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(택1)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300만원 (50%)	○	X	X	X
카탈로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를 위해 외국어(국문)으로 제작하는 제품카탈로그 제작비 지원</li> <li>* 지원금 기준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</li> </ul>	200만원 (50%)	○	○	○	○

※ 시군별 지원여부 변동가능

[별표 1]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전자상거래업	4791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첨부된 [한국표준산업분류표]에서 확인요망

[별표 2]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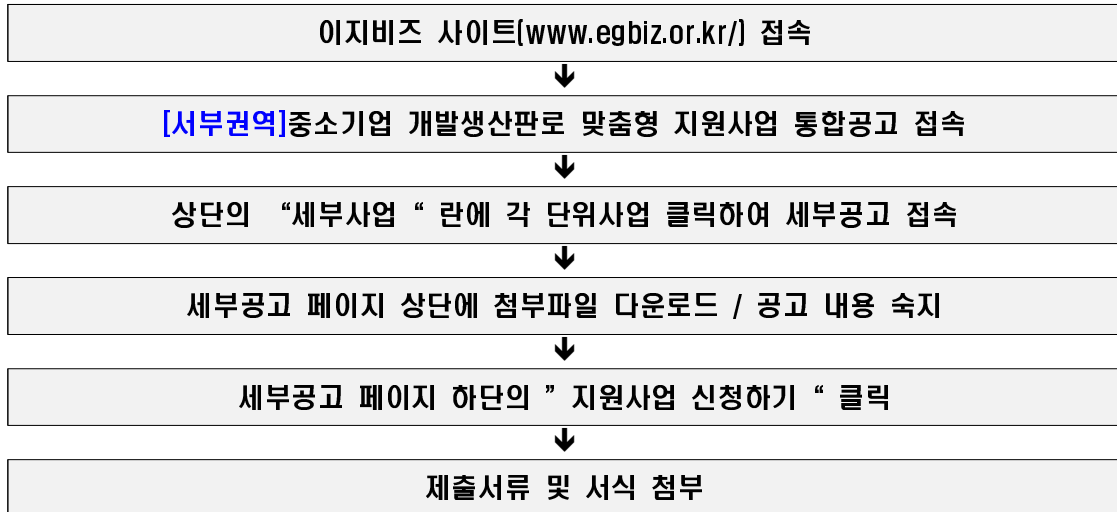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앞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

### 3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

### 3.1 지원사업 신청 시



#### 가.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을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  
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, 당해년도 발행본 첨부
-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제출  
※ 공장등록증은 불인정, 당해년도 발행본 첨부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www.bi.go.kr(창업넷) 확인), 시·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 시, 경기창업벤처센터 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#### 나.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할 시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
## 다.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

○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
- ①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④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※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: <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>에 의한 '재해중소기업확인증' 등)를 제출해야 함.

## 3.2 지원사업 선정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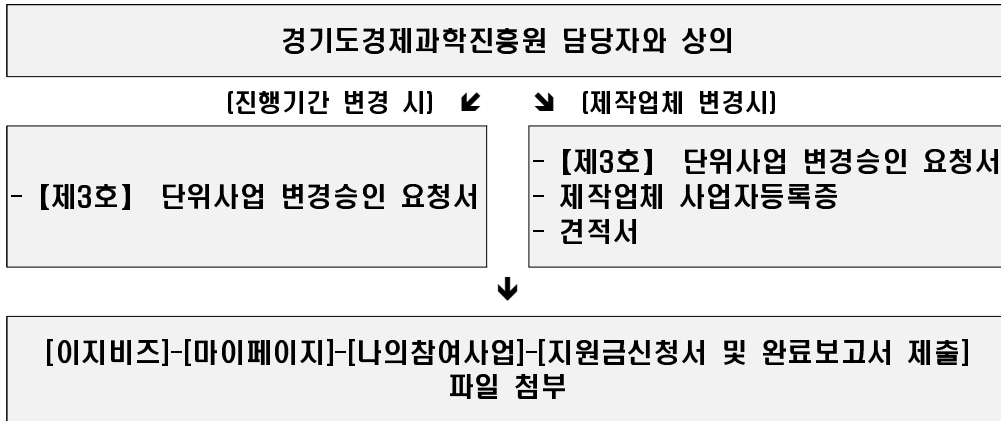
### 가. 선정되신 모든 기업에게

- 본 지원사업은 사업비출연 27개 시군내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27개 시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.
- 경기도와 시군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, 선정기업은 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,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절차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지원결정 통지문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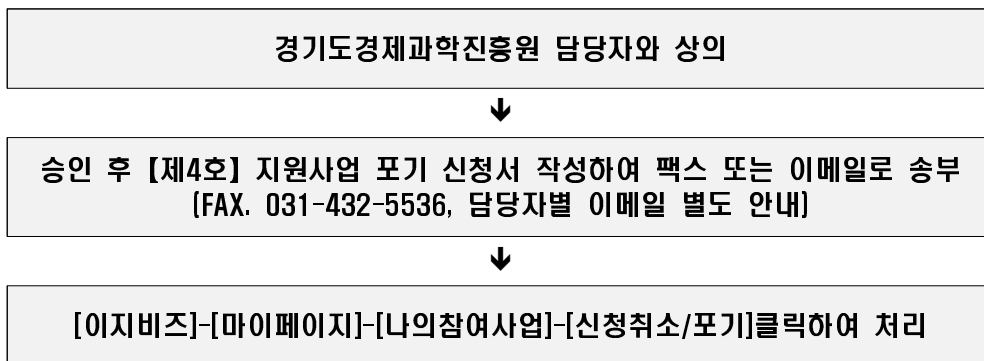
- 기업별 자세한 선정내역은 선정발표일에 기업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“지원결정 통지문(별표 3)”과 “단위사업별 운영기준”을 반드시 숙지
- 지원결정 내역 확인
  - 지원결정 내역의 신청분야, 지원내용, 제작(대행)업체, 진행기간, 총 소요비용, 지원예정액, 유의사항 확인
  - 지원결정 내역의 ‘총 소요비용’, ‘지원예정액’은 신청서 작성 시 산정오류(견적금액, 부담률, VAT포함 등), 예산한도 및 선정심사과정에서 지원결정(액) 등에 따라 기업에서 신청·제출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
- 시제품제작(금형)의 경우, 원가분석을 통해 지원예정액이 최종 확정통지 됨.
- 선정기업 유의사항 및 지원금 지급신청(완료보고서 제출)안내 필독
 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### 다.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



- 총 사업비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(진행기간, 제작업체)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**【제3호】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**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
- 담당자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-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
- 중도포기 기업은 선정지위 회수 후 배정된 지원예산을 후순위 기업 및 추가모집 선정기업에게 배정·지원함

### 라. 지원결정 중도포기 신청



- 결정된 지원사업을 중도포기 시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**【제4호】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**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
- 지원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제재사항 및 차년도 지원사업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
## 마.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비용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완료보고 시 **【제5호】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**를 함께 제출

2014.7.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사업 지출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나, 대행업체(사업자)에서 이를 미사용할 경우, “【제5호】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”를 작성 후 첨부 요망

- 법인카드 사용의 확대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시 **법인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**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업 자부담임
  - 선정기업이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-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

## 바.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경우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선정기업이 어떠한 요청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, 또는 제출자료 보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함.
-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소요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사업 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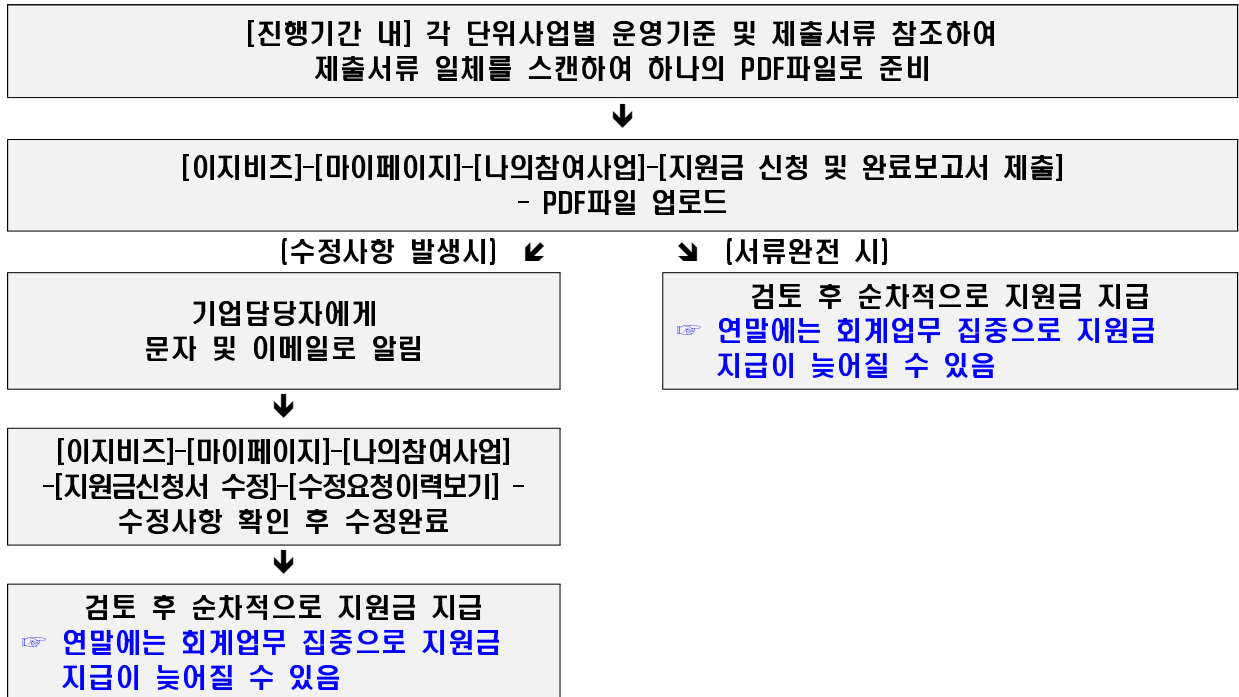
## 사.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**[별표3] 선정기업에게 발송되는 지원결정 통보문**

2020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			2020. XX. XX. 서부권역센터
<b>(2020년 제0차 지원결정 내역서)</b>			
기업명	{{기업명}}	대표자	{{대표자}}
소재지	{{시군}}	사업자번호	{{사업자번호}}
신청분야	{{신청분야}}		
지원내용	{{지원분야}}		
대행기업	{{대행기관}}	소요기간	<b>{{시작일}} ~ {{종료일}}</b>
총 소요비용	{{소요비용}}원	지원예정액	<b>{{지원금액}}원</b>
<p>○ <b>선정(지원결정) 기업 유의사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결정 사항 임의변경 불가 (변경사항 발생시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)</li> <li>- 지원결정 통보일 이후 비용 지급분에 한하여 인정(단, 사후지원 분야 등은 제외).</li> <li>- 최종 소요비용이 지원예정액 보다 적은 경우, 지원금액은 <b>실집행금액(VAT제외) 기준</b>으로 감액 조정됨. (기 결정 통보된 지원액은 증액될 수 없음)</li> </ul> <p>※ 지원금 지급은 실 집행내역 적합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타 기관 중복지원 확인 등의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결정은 취소되고 지원된 지원금율은 환수합니다.</p> <p>○ <b>지원금 지급 신청(완료보고서 제출) 안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<b>사후 지원분야(상표/디자인, 규격인증, 시험분석)는 지원금 신청절차 불필요</b></li> <li>☞ <b>소요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금 신청(완료보고서 제출)을 하여야 함.</b>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원금신청서 및 완료보고서(증빙자료 포함) 등 각 1부</li> <li>②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(2개월 이내 발행, 유효기간 확인) - 민원24발급</li> <li>③ 전자세금계산서 및 소요비용 온라인입금확인증 각 1부</li> <li>④ 기업명의 통장사본(온라인입금확인증에 기록된 통장) 1부</li> <li>⑤ 기타 해당사업별로 요청하는 서류 및 담당자 요청서류 등</li> <li>⑥ 지원성과 설문서 必</li> </ol> <p>※ 지원분야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공고문(제출서류 항목)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 신청서 제출 등 사업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</li> <li>- ①~⑥ 등 제반 서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이지비즈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특별히 오프라인 제출이 필요한 자료(잡지, 카탈로그 등)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우편주소)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</p>			

## 2.3 선정기업 완료 시



### 가.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: 선정기업이 사업신청 당시 온라인신청서에 기재한 ‘진행기간’ 內  
(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 연장가능)
  - ☞ 과제 완료기업은 진행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조기 지급함
  - ☞ 연말에는 회계업무 집중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, 가능한 과제추진을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서 제출 요망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출서류 :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및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, 산출물은 우편으로 제출
  - 온라인 제출 : 지원금신청서, 완료보고서, 설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세금계산서,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, 선정기업 통장사본(선정기업명 계좌)
  - 우편 송부 : 산출물(기업명 확인가능해야함)
    - ☞ 각 단위사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“단위사업별 운영기준”을 확인
- 금형 제작, 목업 제작은 보고서 접수 후 현장방문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장실사(확인) 후 지원금 지급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
---

## III.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서류 (사전분야 기준)

---



**■ 지원사업 신청 시**

구분	제출서류	내용
<b>필수</b>	① 지원신청서	- 온라인에서 작성
	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	- 서식 다운로드
	③ 사업자등록증명	- <b>'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</b> - 국세청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발급
	④ 지방세 납세 증명서(완납증명)	- <b>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</b> - 민원24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">www.minwon.go.kr</a> ) 발급
	⑤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	- 전년도 재무제표 미결산시 <b>2018년도 재무제표와 2019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</b> 제출 - 국세청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출력본 및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
	⑥ 해당사업 견적서	- 제작업체 발급
	⑦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	- 제작업체 발급
<b>선택</b>	⑧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	-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- 중소기업청 창업넷( <a href="http://www.bi.go.kr">www.bi.go.kr</a> ) 발급
	⑨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	-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시 제출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
<b>가점시</b>	⑩ 공장등록증명서	- '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-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( <a href="http://www.femis.go.kr">www.femis.go.kr</a> ) 발급
	⑪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	- G-STAR기업(경기도 스타기업,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) 경기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일하기좋은기업, 착한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중소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녹색인증기업, 장애인 의무고용준수기업 등
	⑫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서	- 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, 국내외 규격인증, 신기술마크, 품질인증 등
<p>· ①~⑦은 필수 제출서류이며, ⑧~⑫은 해당 시에만 제출</p> <p>· 사후신청사업 신청 시 각 단위사업별 [제출서류]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※ 사후신청사업 : 국내외상표출원, 국내디자인출원, 국내외규격인증, 시험분석</p> <p>※ 필수 첨부서류 누락 시 평가에서 제외</p> <p>※ 이지비즈 세부공고페이지 하단의 [지원사업 신청하기] 클릭하여 상단의 서류 스캔본을 첨부</p> <p>※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</p> <p>※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장수를 늘려서 작성</p>		

## ■ 지원사업 완료 시

구분	제출서류	내용
<b>필수</b>	①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	-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
	② 만족도 설문서	- <b>【제2호】</b>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
	③ 지방세 납세 증명서(완납증명)	- <b>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</b> - 민원24(www.minwon.go.kr) 발급
	④ 전자세금계산서	-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<b>【제 5호】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</b> 를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과 함께 제출 - 법인카드 결제시 <b>법인카드 앞면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</b> 사본 제출
	⑤ 이체 확인증	- 온라인 입금증(선정기업의 계좌번호 확인 가능해야함) - 현금거래 및 어음 불인정 -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
	⑥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	- 신청기업명 계좌
<b>해당시</b>	⑦ 산출물(우편 송부)	-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참조 - 카탈로그, 전문잡지, 홍보동영상
<p>· <b>①~⑥은 필수 제출서류이며, ⑦은 해당 시에만 제출</b></p> <p>· 사후신청사업 신청시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 [제출서류]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※ 사후신청사업 : 국내외상표출원, 국내디자인출원, 국내외규격인증, 시험분석</p> <p>※ <b>제출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온라인 제출, 산출물은 우편으로 제출</b>  <b>※ 각 단위사업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</b>  <b>※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 장수를 늘려서 작성 바랍니다.</b></p>		

---

## Ⅲ. 자주하는 질문 및 기타

---

**Q. 지원대상 일까요?**

- A** 사업비출연 시군 소재 본사 또는 공장(사업자등록증)이 위치한 지방세완납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이 대상입니다.  
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공고 및 매뉴얼을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Q.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나요?**

- A** 신청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.(최대 10월 31일까지)

**Q. 공고가 어디있나요? 사업신청 버튼이 어디에 있죠?**

- A** 이지비즈 사이트에 접속 ▶ 상단의 “사업신청” 카테고리 클릭 ▶ 공고 목록 중 “[북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” 클릭 ▶ 상단의 “세부사업” 란에서 신청하고자하는 과제를 클릭 ▶ 과제별 공고페이지 하단의 “지원사업 신청하기” 클릭

**Q. 신청서 양식이 어디에 있죠?**

- A** 과제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상단의 주황색 칸에 한글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.

**Q. 신청서류나 파일은 어디에 올리죠?**

- A** 과제별 공고페이지 하단의 “지원사업 신청하기” 클릭하면 뜨는 새 창에서 신청서작성 후 ‘별첨파일’ 또는 ‘신청서 첨부파일’ 란에 첨부하면 됩니다.

**Q. 시스템관련문의(창이 안떠요, 입력이 안돼요, 오류가 나요, 등의 시스템오류)**

- A** 브라우저 종류가 크롬인 경우 온라인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 
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시기 바라며, 계속된 시스템장애 발생시 031-259-6299 으로 문의하시면 원격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*Q. 중복신청가능한가요? 지원한도는요?**

- A** 기업이 필요한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연간 최대 2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지원금액은 총소요비용의 50%이고 각 과제별 한도가 다르니 세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(예를 들어 카탈로그, 홈페이지, 금형 등 원하는 것을 한도 내에 자유롭게 신청 가능)  
**단, 시흥시는 연간 최대 1,000만원 한도**

**Q. 신청하면 다 선정이 되나요?**

**A** 신청한 지원대상 기업 중 평가표에 의해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. 시제품제작(금형, 목업)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. 시군별, 과제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여부가 상이합니다.

**Q. 이번에 신청기간에 신청 못할 것 같은데...**

**A** 예산 소진시까지 2차, 3차모집이 진행될 수 있지만 시군별로 예산과 경쟁률 등이 다르기에 조기소진으로 다음 차수모집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Q.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제출서류가 뭔가요?**

**A** 이지비즈 사이트 내 각 단위사업 공고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 자세한 신청절차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Q. 사후신청사업이 무엇인가요?**

**A** 2020년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상표디자인 출원 / 규격인증 / 시험분석의 각 증빙서가 발급 완료된 것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.

**Q. 사후신청 과제인데 신청해놓고 진행하면 안되요?**

**A** 사후신청 과제는 완료 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. 선정 시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기에 신청할 때 완료되어 모든 서류가 다 갖춰 있어야합니다.

**Q. 올해에는 지원신청금액 최소 100만원 하한선이 새로 생겼나요?**

**A** 2020년도부터 더욱 완성도 있는 산출물을 지원하기 위 일부 단위사업에 지원신청금액 100만원 하한선이(총소요비용 200만원이상) 생겼습니다.

**Q. 시험분석은 작은 금액의 것도 있고 큰 금액의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?**

**A** 금년도에 받은 시험분석 건의 합이 지원신청금액 100만원이상(총 소요비용이 200만원 이상)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, 건당 30만원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

(예시)

구분	총소요비용	기업 부담금(50%)	진흥원 지원금	지원가능여부	사유
시험분석 1건	100만원	50만원	50만원	×	지원신청금액 <b>100만원</b> 이상이어야 함
시험분석 1건	200만원	100만원	100만원	○	
시험분석 5건	200만원	100만원	100만원	○	

**Q. 전년도에 12월에 완료한건은 신청하면 안되나요?**

**A**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 증빙 및 결과물이 2020년도 산출물이어야 합니다.

**Q. 제작(대행)업체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?**

**A** 없습니다. 기업이 원하는 제작(대행)업체와 진행가능. 소재지는 상관없으나, 업체. 종목에 지원사업 제작이 수행가능한 관련 업이 있어야 합니다.

**Q. 선정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?**

**A** 선정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 공고문의 기재된 선정발표일에 발송되며, 선정발표일이 지연될 경우 개별로 연락드립니다.

**Q.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?**

**A**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1회 연장 가능하며,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.

**Q. 제작(대행)업체를 변경해도 되나요?**

**A**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작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1회에 한해 변경가능하며,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. 자세한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Q. 중도포기가 가능한가요?**

**A** 중도포기하는 경우 내년도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*Q.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나요?**

**A** 기업이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며, 진행기간 연장은 최대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. 진행기간 내 완료하는대로 증빙 갖춰서 제출 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.